

환경부 공고 제2009-359호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2009년 12월 /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르면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자는 관련 서류를 3년간 기록·보존하게 되어 있으나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6-25호)에는 5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음.

2. 주요내용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 상위 규정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맞춰 서류 보존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환경부 공고 제2009-364호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2009년 12월 / 환경부장관

1. 제정이유

폐기물 관리능력이 있는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서 스스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며 지정폐기물 처리가 미흡한 업체 만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적은 관리 인력으로 효율적인 지정폐기물의 관리를 도모하고자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의 자율점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제정내용

자율점검 사업장 지정요건 : 지정폐기물 분야에서 최근 3년 이상 위반사항이 없는 사업장

지정방법 : 지방청장이 업체 신청결과 심사 후 결정

자율점검방법 및 결과 보고 : 반기 1회 자율점검 후 보고

자율점검업체 확인 : 매년 10%를 선정하여 현장 점검 실시

환경부 고시 제2009-366호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2009년 12월 /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 · 시행(‘09. 9. 10 ~)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폐자동차 재활용을 제고를 위한 절차대행기관 지정 및 폐차업체별 배정 기준 등을 마련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확대, 조기폐차 상태점검방법 보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기폐차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절차대행기관의 지정 근거 규정 마련(안 제6조 신설)
 - (1) 조기폐차 요건 확인 등을 자자체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자자체 업무 부담 가중 및 관련 규정 해석 차이에 따른 민원 발생
 - (2) 「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에 따라 자동차 배출저감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자동차환경협회'를 조기폐차 절차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나.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의 '운행 가능 여부 확인' 요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 점검 기록부'를 전문기관(절차대행기관)에서 발급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결과표'로 대체(안 제7조 제4호 삭제 및 제8조 제3호 개정, 제9조 제3항 제3호 신설)
 - (1) 조기폐차 신청 자동차의 정상적 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토록 하고 있는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 점검 기록부'가 자동차 정비소 등에 의해 형식적으로 발급문제 제기
 - (2) 조기폐차 절차대행기관에서 자동차 검사자격증 등을 갖춘 전문 인력을 통해 현장에서 조기폐차 신청자동차의 성능을 직접 확인하여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함
- 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시 지원금액(장치가액의 90% ~ 95%) 등을 고려하여 중고자동차가액의 90%를 지원토록 함(안 제10조 개정)
 -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현행 보조금규정 비교)
- 라. 조기 폐차된 자동차의 자원재활용을 위해 폐차업체별 재활용을 평가기준 및 폐차동차 배정 방법 등 규정(안 제11조 신설)
 -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3항 개정 · 시행(‘09. 9. 10 ~)됨에 따라 조기폐차 절차대행기관에 전문가 및 자자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조기폐차 재활용을 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폐차업체별 재활용율 등을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방법 및 평가기준 등은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규정토록 함
 - (2) 절차대행기관에서는 평가결과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이 높은 폐차업체에 조기폐차 자동차를 우선하여 배정토록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